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사전방문 시 전문가 대동 등》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3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사전방문 시 전문가 대동(안 제4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 3  |
| 2.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안 제48조의2제5항) ..  | 5  |
| 3. 사전방문 모니터링(안 제48조의2제6항 신설 등) .....      | 8  |
| 4. 과태료(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 1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방문 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자 여부 판

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1. 사전방문 시 전문가 대동(안 제4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br>-----<br>-----<br>-----<br>-----<br>-----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
| ※ 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인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함)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1)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와 함께 방문하기를 원하는 반면, 시공자는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 또는 점검과정의 하자 발생 등의 우려를 들어 제3자의 사전방문을 통제함에 따라 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문가가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사전방문의 주체를 ‘입주예정자’ 대신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 입주예정자의 가족, 입주예정자가 선정한 하자 점검대행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방문 참여자를 전문가로 한정하는 후단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주택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가의 자격 및 점검계획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승인하거나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업체의 과도한 하자판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성 강화교육 의무 실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전문가의 자격 박탈 등 규제 수단 도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2.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안 제48조의2제5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④<br>(생략)<br>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u>사실</u>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br><u>&lt;후단 신설&gt;</u>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④<br>(생략)<br>⑤ -----<br>-----<br>----- <u>사실</u> 등(이하 이 조에서 “사전방문 결과”라 한다)-----<br>-----<br>-----<br>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u>사전방문 결과</u>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

현행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제3항),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함)에게 하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제4항).

### 2)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 제48조의2제5항3)에 따라 사업주체는 요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하 “사전방문 결과”라 함)을 입주예정자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 결과를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에게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사전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하자판정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전방문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현행법 제48조의3제8항4)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2

3)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④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조치를 완료한 사항
  2.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
  3.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
- ⑤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모두 완료한 때에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⑦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어 개정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 제48조의3제8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제48조의2제5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48조의3제8항을 삭제하고 제48조의2제5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1. 조정등 사건의 접수·통지와 송달
  2.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 3. 사전방문 모니터링(안 제48조의2제6항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p>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⑤<br/>(생략)<br/><u>&lt;신설&gt;</u></p> <p>⑥ (생략)</p> <p>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p>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⑤<br/>(생략)</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실시현황 및 사전방문 결과 등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사전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⑧ -----<br/>-----<br/>-----<br/>-----제7항-----<br/>-----<br/>-----.</p> |
| <p>※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p>                                                                                                                                                                          |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의 실시현황 및 결과 등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사전방문 모니터링”이라 함)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하자판정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 시에는 사전방문 모니터링의 공동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사전방문과 관련한 하자 여부의 판정 주체인 ‘사용검사권자’ 및 현행법 제48조의3<sup>5)</sup>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시·도지사’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사전방문의 내실 있는 실시 및 하자에 대한 적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우려, 공기 지연의 가능성, 현행법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sup>6)</sup>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

#### 5)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전방문 점검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6)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과태료(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제106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u>4의2. ~ 4의5.</u> (생략)</p> <p>5. ~ 7. (생략)</p> <p>④·⑤ (생략)</p> | <p>제10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제4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u></p> <p><u>4의3. ~ 4의6.</u> (현행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와 같음)</p> <p>5. ~ 7.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p>※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p> <p>※ 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인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p>                                    |                                                                                                                                                                                                                                                    |

현행법 제106조제1항제1호7)에 따라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안은 제48조의2제1항 후단의 신설을 전제로 사전방문 시 전문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 7)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려는 것으로, 사전방문을 위한 전문가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는 사전방문 장소는 시공자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sup>8)</sup>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도한 제재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 우려 및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주택협회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인의 출입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대한건축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해당 전문가를 하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건축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76 |

8) 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제57조),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제156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제162조),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제333조),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시(제384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제44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제457조) 등에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